

인감, 인감등록

○인감

일본에서는 행정기관에 내는 신청서류나 중요한 우편물의 수취, 택배 소포의 수취 등에 사인과 같은 의미로 인감을 사용합니다. 이 같은 용도에는 통상 「미토메인」이라는 소형 인감을 사용합니다.

○실인과 인감등록증명서

시구청촌의 사무소 등에 인감등록을 한 인감을「실인」이라고 합니다. 실인으로서 사용하는 인감은 위조하기 힘들며 비교적 큰 인감을 사용합니다. 본명이나 등록된 통용명 또는 한자 읽는 방법이 병기된 성명의 인감으로 등록해주시요.

시구청촌 사무소에서 등록절차를 합니다.

니시노미야시에서는

니시노미야시청 시민과 0798-35-3108 또는 각 지소, 서비스센터, ACTA 니시노미야 스테이션(토·일·공휴일 제외)

그 인감이 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「인감등록증명서」라고 합니다.

실인을 사용하는 경우, 인감등록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인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. 일본에서는 토지와 집, 자동차를 살 때 등,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, 「실인」과「인감등록증명서」가 필요합니다.

○인감등록

인감등록은 우리들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

(1) 인감등록을 할 수 있는 사람

15 세이상으로 그 시구청촌의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.

(2) 등록방법

인감등록신청은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, 등록하는 인감과 체류카드 등(체류카드, 특별영주자증명서, 여권 중에서 하나)을 지참하면 그 날 중으로 인감등록이 됩니다.

대리인이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○인감등록증 (카드)

인감등록하면 인감등록증(카드)이 발행됩니다. 이 인감등록증(카드)를, 시구청 담당창구에 제시하여 본인(또는 대리인)이 신청하면 인감등록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※주 시구청촌에 따라서는 신청하는 곳, 신청방법, 서비스 종류, 명칭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일본어를 아는 사람과 같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